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귀하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입주대상자(당첨자/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한 내에 청약신청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시어 최종 입주대상자(당첨자/예비당첨자)로 선정되어야 하며, 서류제출 기한 내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자격확인 서류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의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의 당첨사실 등의 전산 검색결과를 토대로 입주대상자(당첨자/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당첨자 서류검수 결과에 따라 당첨자 및 부적격 의심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부적격 의심자로 통보한 날부터 7일간의 소명기간이 주어지며 소명사실이 부적합하거나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해당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자로 최종 분류되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간 전산에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당첨일로부터 당첨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아래기간 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당첨 유형별 관련 서류 및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제출방법	견본주택 방문제출
제출기간	정당 당첨자 : 2021년 04월 19일(월) ~ 04월 22일(목) (10:00 ~ 17:00) 4일간 예비 당첨자 : 2021년 04월 23일(금) ~ 04월 25일(일) (10:00 ~ 17:00) 3일간
제출장소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견본주택 : 울산시 남구 삼산로 248 / (현대백화점 사거리)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2-282-6000(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제출	당첨유형별 서류제출 안내 참조

※ 아래의 경우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적격 소명이 해당 소명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적격검수를 수행하였으나 정당계약 종료시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 계약금을 입금하였더라도 정당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방문 시 유의사항

- ※ 견본주택 방문 시 검수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자격과 부적격에 대한 소명은 서류 제출 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유선상의 답변은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필히 검수 기간 내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신청 자격 및 소명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제출 후 미계약시에도 반환되지 않고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 ※ 견본주택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방문자 기록 작성 및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확인 제출서류 안내(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자격 확인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 주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증명원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25)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상 "상세" 발급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 사실증명원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복무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	출입국 사실증명원			• 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주민등록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5)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상기 해외 체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기간 : '주민등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5)'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전부공개 '상세' 발급 (※과거 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및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발급 시 '상세' 발급 된 제출서류에 한해 인정)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에 한함)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사항	○	출입국 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제출기간 : '주민등록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5)'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경정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주택전시관 비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 사항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임 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 하여 인정하는 서 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하여 인정하는 서 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 안내문은 편집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